

2023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계획 안내

【 '23. 2. 15.(수), 교무처 학사관리과】

□ 수업 운영 기준

- (대면수업) 코로나19 이전의 수업 방식인 “대면수업”으로 운영
 - 학기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학생이 발생한 경우, 비대면 수업자료 제공 및 공결 처리
- (원격수업) 원격수업 교과목 신청절차에 따라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한 학기 수업 가능
 - 1차시 수업시간*은 대면수업과 동일한 50분으로 구성하며, 수강 기간, 출석 인정 기준 등 수업 관련 주요사항 사전 안내로 수업 운영 내실화
 - * 수업시간은 강의 동영상 재생시간과 질의응답 등 전체 교수-학습활동을 포함

□ 강의실 방역 기준 : 실내 마스크 착용 (권고)

구 분	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	
	현 행	변 경
등교기준 (확진자)	7일 자가격리 (등교 중지)	유 지 ※ 향후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
강의실 방역관리	강의실 칸막이 유지	강의실 칸막이 제거

- 손 씻기,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 철저
-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

<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>

-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*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*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② 코로나19 고위험군**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**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(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)되어 있는 경우
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□ 출결 관리

- (출결 처리) 수업시간마다 출결사항을 확인하되, 대면수업은 강의실 출석여부로, 원격수업은 수업활동 이행여부를 근거로 출결 사항을 확인하여 출석부 반영(LMS를 활용한 전자출결 적극 권장)
- (출석 인정)

구 분	출석 인정 기간	제출서류	
		신청서	증빙서류
코로나19 확진시	격리 해제 시까지	출석인정원	격리통지서,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코로나19 백신 접종 시	접종일 + 접종 후 1일(이상반응 시)	출석인정원	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시 의사소견서

※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은 수동감시(10일) 대상자로 검사 2회(3일 이내 ‘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’ 1회, 6~7일차 신속항원 검사 1회) 권고

- (출석인정 절차) 대상 학생이 소속 학과에 공결 신청 → 학장 허가 →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

※ 학생 출석인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(오아시스)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발중(‘23.1학기부터 적용) -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

□ 성적·평가

- (평가원칙) 평가의 엄정성을 위하여 중간·기말시험 대면시험 실시
- (성적부여) 「성적평가 지침」에 의거 평가방법 적용
 - 교양·교직 과목은 상대평가 I, 전공과목은 학과·전공 내규에 따름
 - ※ 2023. 1학기 전공과목 평가방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내규 개정 후 공문 제출
- (성적공개) 학생들의 학습능률 향상을 위하여 세부성적(중간 및 기말고사, 과제, 출석 등)을 L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권장